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폐지 시 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며,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 나.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 다.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기준”을 “가중된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횟수는 같”을 “기간의 계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을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계산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u>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u> (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 분의 <u>기준은</u>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u>위반횟수는 같</u> <u>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u> <u>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u> <u>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u> <u>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u> <u>여 계산한다.</u> <u><신 설></u> 나. (생략) 다. (생략)	[별표 5] <u>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u> (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u>가중된</u> <u>처분기준은</u> ----- -----, ---- <u>기간의 계산은</u> ----- ----- <u>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u> <u>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u> <u>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나. <u>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u> <u>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u> <u>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u> <u>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u> <u>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u> <u>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u>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신청인 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 상태 (장애/질병)	취업 상태	
						직업	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의료지원비						
------------	---	--	--	--	--	--	--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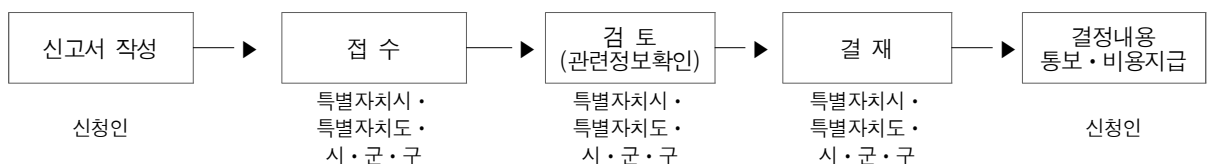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2. 수수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고지사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 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
(☐ 폐지 ☐ 운영중단 ☐ 운영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장 성명		
	소재지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운영중단기간	부터 까지	
폐지 · 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 사유				

신고증 또는 인가증 분실사유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명	취업	명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명	퇴소	명
	위탁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의 (☐ 폐지 ☐ 운영중단 ☐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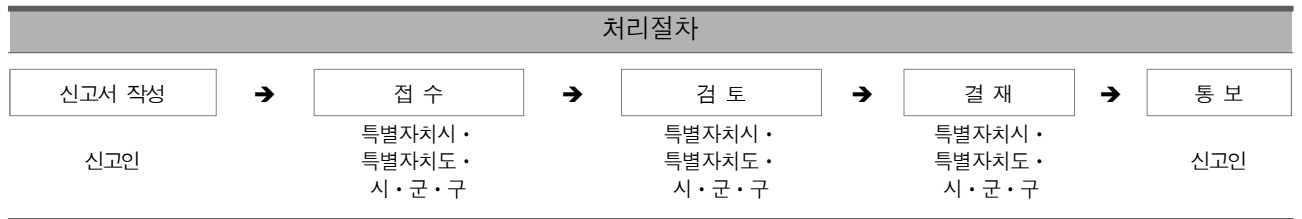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23